

고 발 장

고 발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담당자 류제성 변호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 화 : 02-522-7284

피고발인 1.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의 경감급 직원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연락처: 02-1566-0112

 2. 경찰청장(강희락)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연락처: 02-1566-0112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88년 5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률전문가 단체입니다. 원고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권의 옹호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변론 활동과 법률 제·개정 등 입법 활동 및 사법감시 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피고발인1은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감급 직원이며, 피고발인2는 피고발인1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권자입니다. 피고발인1은 경찰청에서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이 사건의 개요

(1) 피고발인1은 2010년 4월 16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지방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에 6월 2일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이 문서는 참고자료 1에 나와있음]”)를 전달하였습니다(최초 언론보도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청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달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보도 등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감급 직원인 피고발인1이 사건 문서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문서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진보성향의 후보자들에 대해 ‘좌

파 후보'라 지칭하면서 '학교·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무상급식·후보 단일화 외에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전교조·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금·조직적인 면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나가는 측면까지 함께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1은 보수 성향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1 연합뉴스 기사, 참고자료2 한겨레 신문기사, 참고자료3 경향신문기사 기사].

(2) 피고발인2는 피고발인1을 포함한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권자이기에 피고발인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휘 혹은 명령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성립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는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라고 하고 있어 그 정도가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해석의 폭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92 판결)고 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수범자가 동법 제60조에 의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들로서 이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선거의 공정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이 부하 공무원에게 소위 좌파 후보의 선거전략, 좌파세력들의 좌파 후보에 대한 지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측면 등을 파악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정보의 수집을 통해 좌파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함으로써 좌파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파 교육계의 선거대비 전략',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여당인 한나라당)과 가까운 성향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기획하거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인 반전교조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직권남용죄의 성립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2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대한민국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이용하여 일선 경찰들에게 이 사건 문서를 하달함으로써 법률상 의무없는, 위법한 정보수집을 지시하여 강제한 것이므로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언론보도로 경찰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마지 못해 그 사실을 공식시인하면서도 '경찰청 본청 정보과의 경감급 직원이 상부의 결재없이 임의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그러나 다른 어떤 기관보다 직무규율이 엄정해야 할 경찰이, 적법한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나 승인없이, 일개 경감급 직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일선 경찰청 정보과에 하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인이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문서가 경찰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재 시스템상 상부의 결재없이 공문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청 해명의 진위를 밝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민주당 김유정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경찰청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찰의 치욕이 아닐 수 없으며 무너진 조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발인1인 상부의 승인없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달하였다면 피고발인1 역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발인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발인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2의 경우는 피고발인1에 대한 명령·지휘권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발인1의 행위에 대해 명령 혹은 지휘하였거나 또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고발인2가 이 사건 문서를 결재하여 일선 경찰들에게 정보수집을 지시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설령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하달이 피고발인2의 승인없이, 피고발인1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1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증거 방법

- | | |
|-----------|-----------------|
| 1. 참고자료 1 | 4월 21일자 연합뉴스기사 |
| 1. 참고자료 2 | 4월 22일자 한겨레신문기사 |
| 1. 참고자료 3 | 4월 22일자 경향신문기사 |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장 귀 중